무역상무학회지 제25권
2005년 2월 pp. 75~98

논문접수일 2004.12.22
논문심사일 2004.12.23
심사완료일 2005. 1. 5

eUCP 적용원리의 규명과 신용장거래질서 확대 개편방안의 모색*

김 기 선**

Ⅰ. 서론
Ⅱ. UCP와 eUCP 해석적용 방안의 전제 조건
Ⅲ. UCP와 eUCP 해석적용 원리의 이론적 규명
Ⅳ. 신용장거래질서의 최적편성을 위한 제언
Ⅴ. 요약 및 결론

Ⅰ. 서론

신용장거래방식은 비록 서류라는 제한된 정보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온 자체 경험률의 총체인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라 칭함)의 제반 규정에 의해 그 거래 리스크의 예측이 가능하였고, 신용장 거래주체간에 수긍 가능한 이같은 해석적용 기준의 틀을 통해 그간 신용장거래 관련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1)]

*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학술진흥재단 해외교수파견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무역학과 교수
1)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Margarett M. Gatti, "Maximizing Prafita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2*, 1998, pp.18-21; F. John Mathis, "Export Payment Terms Adjust the Risk to Exporters and the Cost to Importer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pp.17-20; Gary Mandell, "Export Credit Insurance:An Effective Marketing and Financing Tool",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pp.20-21 참조.

그러나 전자정보 네트워크 중심의 인터넷 방식의 등장으로 새로이 태동한 전자기록의 전자적 제시라는 사실의 문제는 신용장 거래계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설명 규범을 요청하였던 바,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장거래계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충규정(이하 eUCP라 칭함)이라는 합목적적 형태의 규칙체계를 제정, 공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 eUCP의 제정으로 신용장거래계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UCP라는 축적된 경험 속에서 신용장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신용장거래계를 규율하고 있었던 UCP에 보충규정의 형태로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가 포함된다는 것은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간 거래당사자간에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분쟁과 마찰의 소지가 있었던 전자적 제시의 유효성 여부가 eUCP의 형태로 규칙체계의 테두리 속에 편입됨으로써 전자적 제시라는 사실의 문제(question of facts)가 법률해석의 문제(question of law)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자기록의 제시와 관련한 관행들이 무엇을 포함하며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그리고 과연 이들이 신용장거래관습 속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의 문제는 주어진 특정상황에 전자적 제시라는 새로운 관행이 신용장거래질서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 즉 법률의 문제로 귀착되었다는 것이다.[3]

따라서 이제 eUCP 연구에 있어서 그 핵심은 전자적 제시라는 관행의 문제에서 이들을 다루는 각 조항들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제시의 해석·적용방안의 도출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하겠다. 본 연구가 전자무역과 신용장 제도의 실체융합이라는 연구목적 하에서 신용장거래질서의 확대개편을 위한 해석적용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분석영역의 변화에 기인한다.

신용장거래관습을 지배하는 UCP는 법규 해석적용의 반복성과 명료성에 힘

---

2) ICC,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1.0*, ICC Pub. S. A., 2002, January, p.6; Bill cameron, "eUCP",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3*, July-September 2001, ICC Pub. S. A., p.2 이하 참조.

3) 김기선, "eUCP의 본질적 함의와 조항해석적용의 괴리조정:법해석학적 접근", 무역상무연구 제1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8, p. 67 ; 사실의 문제, 법률해석의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E. Byrne, "Revised UCC Section 5-108(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CCLJ*, Spring, 1997, p.422 참조

입어 이미 확인된 신용장 거래질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CP 제도는 비록 그것이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신용장거래관습에서 파생·창출된 것이긴 하지만 소위 관행의 반복성이 없었던 상태이므로 행위의 반복성에 의한 자생적 시장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일정한 의미의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eUCP 관련의 시장질서는 오히려 새롭게 태동한 제도로부터 의도적으로 산출되어 적응되어져 가야 하는 작위적 질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활용되는 범위가 초국가적 형태의 시스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 부문에 있어 범세계적인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서는 eUCP 신용장의 거래당사가간에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통적 신용장거래에 비해 일응 더욱더 커졌다 하겠다.

eUCP는 그것이 생경한 거래관습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효초기의 상황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 의해 아직 그 해석적용에 있어 충분한 자기완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새로운 기회이자 선택이라 할 수 있는 eUCP 제도의 도입은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eUCP 법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긍 가능한 형태의 평균율로서의 이론적 연구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4)]

eUCP는 비교적 적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적용범위와 기능, 실무절차, 은행의 행동요령과 면책기준 등에 대해 대단히 정교하고 함축적인 기준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잘못된 해석, 적용은 실무절차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장 거래주체간의 법률관계를 호도하고 논점일탈의 판단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UCP 조항들에 대한 법률해석방안이 합당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석적용의 결과가 현존하는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

4) eUCP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서로 다른 여러 견해들의 충돌 내지 견해의 양극화는 eUCP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론화 작업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시정·조율·보충할 수 있는 평균율로서의 이론적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연구의 최근 동향은 Zahoor N. Dattu, "eUCP Watch : Are the Banks Ready?", *LC Monitor, Vol.4, Issue 4*, April, 2002, pp.1-6 참조 ;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1호, 2002, 5. p. 242 이하 참조 ;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p. 101 이하 참조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신용장거래계의 후생의 증대를 어떻게 가능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컨대 신용장 거래관습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eUCP가 그 합목적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UCP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결과적으로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이 확대개편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맥락구조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용장거래계의 과제인 신용장 거래질서의 최적편성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Ⅱ. UCP와 eUCP 해석적용 방안의 전제 조건

1. 분석의 개념적 틀과 연접성 특질

(1) 분석의 개념적 틀

eUCP 규정들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eUCP 신용장거래에 내포된 전자무역 특유의 거래 리스크를 당해 규정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 또는 관리할 수 있느냐에 기인한다.

주지하고 있듯이 최근 전자적 방식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는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ETA(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및 Uniform Commercial Code Section-2B(Licence) 등과 같은 법규들에 있어, 이들 법규가 규율하고 있는 전자무역 특유의 거래 리스크의 배분과 분담의 문제는 입안자들의 여러 견해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해 왔음은 eUCP 해석적용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eUCP가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테두리 속에서 신용장거래계로부터 수긍받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에 충실하고 이의 해석에 架空性을 가급적 배제한 가운데,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의 편익을 적절히 분배, 이들의 기대효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신용장거래질서가 확대개편되고, 그 후생효과가 인정

5) 신용장 거래관습에 관한 기본적 해석적용방안의 원리에 대해서는 Henry Harfield,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pp.1-11 참조.

될 것이기 때문이다.

eUCP 신용장거래에서도 그 중심점이자 연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개설은행을 비롯하여 수익자, 개설의뢰인 등과 같은 신용장의 실질적 권리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들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eUCP 규정들의 무의미한 나열들은 결과적으로 eUCP 신용장 제도의 失效化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규정들에 있어서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석적용방안의 구축 여부[6]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사활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한편 서류 중심의 전통적 신용장 거래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UCP라는 신용장 거래관습 규칙체계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위준칙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전자기록 중심의 eUCP 신용장 거래방식의 경우에는 거래 주체들에게 수긍될 수 있는 거래 관행이 단기간에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거래 과정에 잠재해 있는 거래주체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간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었던 법규나 제도가 미비하여 당해 신용장 거래에 대한 법적인 신뢰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가정은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 중의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eUCP 규정의 목적을 eUCP 신용장거래에서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석적용방안의 제시라 설정한다면, 일견 eUCP의 제반 조항들은 UCP의 각 조항들에 비해 그 법적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는 거래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추상적으로 구현시킨 제반 전자기록의 전자적 제시가 거래당사자에게 주는 편익의 측면에서 전통적 서류제시 관행에 비해 비록 설득력이 크다 하더라도 이를 규율해주는 관련 eUCP 조항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면 당해 eUCP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전체 신용장 거래관습의 안정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합리적 해석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6) 이와 같은 연구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ter VerLoren Van Themaat,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ue, 1981, p.5 참조; George Schwarzenberger,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Stevens & Sons, 1967, p.24 참조.

(2) 연접성(連接性) 특질의 도출

eUCP는 전자기록의 제시 또는 전자기록과 종이서류가 혼재된 제시를 수용하기 위해 UCP의 보충규정의 형태로 제정된 보칙으로써 그 주된 기능은 현행 UCP를 보완해주는 것이다.[7] 신용장거래계는 eUCP를 UCP내의 종속적 보충규정으로 존치시킨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주체들은 UCP를 배제한 채 eUCP만을 당해 신용장 거래의 독립적인 준거규칙으로 분리 채택할 수는 없다.

eUCP와 UCP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eUCP 2조는 그 (a)항에서,

"UCP에 준거하는 신용장(eUCP 신용장)은 UCP 준거문언의 명시적 삽입이 없이도 UCP에 준거한다." 라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곧 eUCP에는 UCP를 대체하는 독립적 기능은 상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신용장 거래관습의 전통적 해석규범인 UCP와의 연계성 하에서만 유효한 의미를 가짐을 함의하고 있다.

Dan Taylor와 James E. Byrne은[8] 현행 eUCP 12개 조항과 UCP 조항과의 연계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eUCP 조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eUCP 신용장 거래에 당연 적용되는 UCP 조항들(1군),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UCP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종이서류와 관련해서도 UCP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적 형태의 eUCP 조항들(2군), 종이서류를 취급하는 UCP 조항과는 다른 성격을 갖지만 전자기록에만 관련이 있어 이들 조항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 eUCP 조항들(3군), 그리고 UCP 조항의 해석적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eUCP 조항들(4군)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군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eUCP 신용장 거래 역시 UCP 조항들의 당연적용이라는 청사진 위에 전자기록에 관한 특유의 eUCP 조항들을 적용해 나간다는 본 연구의 대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결국 전체 신용장 거래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UCP 중심의 해석적용방안의 영역과 eUCP 특유의 해석적용방안 영역, 즉 이 두 설명규범의 결합에 의해 구현되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하겠다. 본 연구는 UCP와 eUCP의 이와 같은 본질적 연관성을 '연접성 원칙'이라 정의한다.

---

7) eUCP 1조

8) James E. Byrne & Dan Taylor, *ICC Guide to the eUCP : Understanding the Electronic Supplement to the UCP 500*, ICC Pub. S.A., 2002, pp. 41-43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eUCP 신용장거래관습과 전통적 서류제시 중심의 UCP 거래관습이 공존하게 될 때 연접성 원칙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만 신용장 거래관습이 그 합목적적 기능을 유지한 채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외연이 확대되고, 신용장 거래질서가 최적편성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을 전제하도록 한다.

첫째, 이와 같은 추상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기 위해 재무경제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론과 기대효용 극대화 이론을 도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신용장 거래주체들은 자신의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를 선택하려 할 것이므로 만일 특정한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에 법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면 당해 거래주체는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위험회피적인 효용(risk-averse utility)을 가질 것이다.

둘째, 위험회피적 효용을 갖는 거래주체는 거래의 편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당해 거래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세째, 신용장거래주체들은 당해 신용장 거래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거래 리스크들의 발생 가능성에 의해 거래의 목적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의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를 준용한다. 즉 당해 신용장거래에서 기대되는 편익이 동일하면 리스크가 낮은 행위 준칙을 선호하고, 그 거래의 리스크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거래의 기대 편익이 높은 행위 준칙을 선택하게 된다는 선호체계를 따르게 됨을 의미한다.

끝으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의 전자적 제시의 방식은 그 기대 편익이 높다고 인정된다 해도 내재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관점의 서류제시 관습을 일순간에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함께 상존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보완, 혼용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혼합된 거래방식 하에서 신용장 거래주체들이 당면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은 그것이 주관적이든 또는 객관적이든간에 확률을 부여하여 이를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UCP와 법원의 판례의견 등으로 오래 기간 축적되어온 신용장 거래관습의 경험률(반복성)과 이의 범세계적 용례(표본의 크기)는 당해 확률분포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접근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장거래관습의 이같은 정규분포의 가정은 당해 거래관습을 규율하는 추상적 형태의 UCP와 eUCP 해석 적용방안의 기대편익과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적인 평균과 분산의 함수로 표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개념적 전제가 될 것이다.

Ⅲ. UCP와 eUCP 해석적용 원리의 이론적 규명

1. eUCP 조항의 이론적 함의

전자기록을 제시하는 신용장 거래에서 eUCP가 해석적용될 영역을 규정한 eUCP 2조 (b)항은 "eUCP가 적용되는 경우, 이들 세부 조항들은 UCP 적용과 다른 결과가 창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공히 그 효력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eUCP의 12개 조항들은 신용장통일규칙을 기준점으로 하여 전자적 제시 특유의 부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적용의 주된 골자이기 때문에 eUCP 제반 조항들은 보완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상충되어 신용장통일규칙의 각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항들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eUCP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지배되어 오고 있던 신용장거래관습의 편익에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와 의도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조항이라 보겠다.

한편 신용장거래계는 전자기록의 전자적 제시를 수용하는 eUCP의 제정으로 그 외연의 확대를 통해 신용장 거래관습의 법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인을 마련하였지만, 문제는 과연 당해 eUCP 제반 조항들이 그러한 본연의 합목

적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당해 조항의 법정신에 따라 우선 1차적으로 eUCP 조항의 해석 적용에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도록 한다. 분석을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부호를 정의한다.

2. UCP와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비교정태분석

신용장거래계에는 현재 UCP에 의한 신용장 거래관습(α_f)과 이에 추가된 eUCP에 의한 신용장거래관습(α)이 공존함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등식이 성립한다.

$\alpha + \alpha_f = \omega_0$,(ω_0:신용장거래관습) 따라서,

$$\alpha_f = \omega_0 - \alpha \quad \cdots\cdots(1)$$

이때,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UCP에 의한 신용장거래관습(α_f)은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와 경험률에 따라 법률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낮아 그 기대편익 (R_f)이 예측가능하지만, eUCP에 의한 신용장 거래관습은 전자적 제시가 주는 규범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높아 비록 그것이 높은 기대편익

($\tilde{R}$)을 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불안정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tilde{R}$)은 랜덤 변수(random variable)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신용장 거래관습의 총체적 기대효과 ($\tilde{W}$)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tilde{W} = \alpha_f (1+R_f) + \alpha (1+\tilde{R})$$

$$= (\omega_0 - \alpha)(1+R_f) + \alpha (1+\tilde{R})$$

$$= \omega_0 (1+R_f) + \alpha (\tilde{R} - R_f) \quad \cdots\cdots(2)$$

식 (2)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UCP의 지배를 받는 전통적 신용장 거래관습에

따른 기대편익을, 두번째 항은 전자적 제시를 규율하는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추가적 편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편의상 R_f =0으로 가정하면[9] 식 (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ilde{W} = \alpha(1+\tilde{R})+(\omega_0 - \alpha)$, 즉

$$\tilde{W} = \alpha\tilde{R} + \omega_0 \cdots\cdots(3)$$

이때 신용장거래계는 $(\omega_0 - \alpha)$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의 기대효과 $(\tilde{W})$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eUCP 신용장거래관습(α)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므로,

$$\max[u(\tilde{W})]=Eu(\omega_0+\alpha\tilde{R})=V(\alpha)\cdots\cdots(4)$$

식 (4)에 의해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α를 구하기 위한 일계조건과 이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E[u(\tilde{W})]}{\partial\alpha} = V'(\alpha)=Eu'(\omega_0+\alpha\tilde{R})\tilde{R} \cdots\cdots(5)$$

$$\frac{\partial^2 E[u(\tilde{W})]}{\partial\alpha^2} = V''(\alpha)=Eu''(\omega_0+\alpha\tilde{R})\tilde{R}^2 \cdots\cdots(6)$$

일계조건 식 (5)에서 α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계조건 식 (6)이 음(-)의 부호를 가져야 하는 바, 신용장 거래계가 위험회피자의 효용을 갖는다고 전제한 이상, $u''(\omega_0+\alpha\tilde{R})<0$이므로 $V''(\alpha)<0$이 되어 위의 이계조건은 만족된다. 따라서 식 (5)에서 도출할 수 있는 α는 신용장 거래계의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eUCP 신용장거래관습이 됨을 증명할 수 있다.

9) 이 가정은 신용장거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상쇄시킬 만큼 법적 안정성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R_f의 거래방식과 전자상거래 방식이 공존할 때 α=0이라고 가정하면 식 (5)에서

$$V''(0)=Eu'(\omega_0)\tilde{R}$$

$$=u'(\omega_0)E\tilde{R} \quad \cdots\cdots(7)$$

이 유도된다.

이때, (7)식에서 만일 $E\tilde{R} \leq 0$이라면 즉,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기대편익이 0이거나 0보다 작다면 $V'(0) \leq 0$이 된다. 여기서 위험회피자로서의 신용장 거래계의 위험회피도는 모든 α에 대해 $V'(\alpha)<$이므로 $E\tilde{R} \leq 0$ 이라는 필요·충분조건하에서 α=0이 최적해가 된다.

이 의미는 위험회피자로서의 효용을 갖는 신용장 거래주체들의 총합인 신용장거래계는 만일 eUCP 신용장거래관습이 주는 기대편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는다든지(다시 말해 UCP가 신용장 거래관습에 주는 통상적 의미의 편익보다 적은 기대치를 보일 때), 또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체제가 갖는 기대 효용에 오히려 부(負)의 효과를 준다고 평가할 때에는 당해 eUCP 신용장 거래관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전자적 제시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행위에 대해 신용장 거래주체들은 eUCP 조항들의 해석 적용 방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점차적으로 당해 eUCP 조항들은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체제 내에서 사문화 되어 갈 것임을 함의한다.[10]

그러나 식 (7)은 기대효용극대화 가설의 불포화만족(nonsatiation)의 공리에 따라 $u'(\omega_0)>0$ 이며, 또한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기대편익이 일반적 의미의 UCP 신용장거래관습의 편익인 R_f=0보다 크다는 전제가 유효해진다면, 즉 $E\tilde{R}>0$이라면 신용장거래계는 다음의 식

10)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이 eUCP 내에 유효한 형태로 존재할 경우 그것이 신용장거래주체들에게 수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이 주는 신용장거래관습의 총체적 효용에 주는 기대편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신용장거래관습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소위 리스크 차단장치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의 1절 참조

$Eu'(\omega_0 + \alpha \tilde{R})\tilde{R} = 0$ ·····(8)

을 만족시키는 범위, 다시 말해 eUCP 신용장거래관습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에 주는 한계기대효용이 0이 될 때까지 eUCP 조항의 적용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함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eUCP 조항들이 신용장 거래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UCP 신용장거래관습보다 높은 기대편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eUCP 조항들이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종전의 UCP만에 의해 당해 신용장거래가 지배되는 것 보다 오히려 새롭게 선택된 eUCP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편익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eUCP 조항들은 위험회피형의 신용장거래주체들에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 한계효용은 감소,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한계효용은 당해 eUCP 조항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eUCP 조항은 자신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대편익을 갖지 않고서는 위험회피형의 신용장거래 주체들에게 높은 가치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적 제시라는 새로운 선택행위의 불확실성을 기존의 UCP만으로 설명, 해결해 줄 때보다 eUCP의 제반 조항들이 신용장거래관습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때 더 큰 기대편익이 창출되어야만 비로소 당해 eUCP 조항들은 그 합목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게 된다 하겠다.

3.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조항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

전자적 제시에 관한 설명규범으로 eUCP가 도입된 이상, 그리고 그것의 기대편익이 기존의 신용장 거래관습보다 높다고 인정될 경우, 그 세부 조항들의 적용결과는 기존의 신용장 거래관습에 비해 그 해석적용의 기회집합의 확대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주지하고 있듯이, 새로운 거래관행들의 생성과 적용에 있어 당해 거래관행의 활용과 준수는 기존의 반복적으로 채택되어 왔던 거래관습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관행들이 편입되어 새로이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든 사회현상의 경험률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만일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관행이 기존에 수긍되었던 거래관습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이에는 소위 행위의 반복성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행위의 반복성에 의한 자생적 시장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소위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제도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초래되어 거래주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 더 이상 그 작위적 시장질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기대편익이 비록 높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라는 문제는 신용장 거래관습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이러한 효율적 배분의 문제에 접근, 그 시사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식 (2) 즉

$\tilde{W} = \omega_0 (1+ R_f) + \alpha (\tilde{R} - R_f)$ 로부터 μ_ω 와 σ_ω 를 구하도록 한다.

(μ_ω : 랜덤변수 $\tilde{W}$ 의 기대값, σ_ω : $\tilde{W}$ 의 표준편차.) 우선,

$$\mu_\omega = E(\tilde{W}) = \omega_0 (1+ R_f) + \alpha (\mu_1 - R_f) \cdots\cdots (9)$$

$$\text{Var} (\tilde{W}) = \sigma_\omega^2 = \alpha^2 \ \text{Var} (\tilde{R}) = \alpha^2 \sigma_1^2 \cdots\cdots (10)$$

따라서,

$$\sigma_\omega = \alpha \sigma_1 \cdots\cdots (11)$$

(μ_1 : 랜덤변수 $\tilde{R}$ 의 기대수익률, σ_1 : $\tilde{R}$ 의 표준편차)

여기서 식 (11)을 식 (9)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도출된다.

$$\mu_\omega = \omega_0 (1+ R_f) + \frac{\mu_1 - R_f}{\sigma_1} \sigma_\omega \cdots\cdots (12)$$

식 (12)는 신용장거래계의 선택가능한 UCP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배분조합들로 이루어진 기회집합(opportunity set)으로서 [그림

$$\frac{\mu_1 - R_f}{\sigma_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인 1차식의 선형 관계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적 배분가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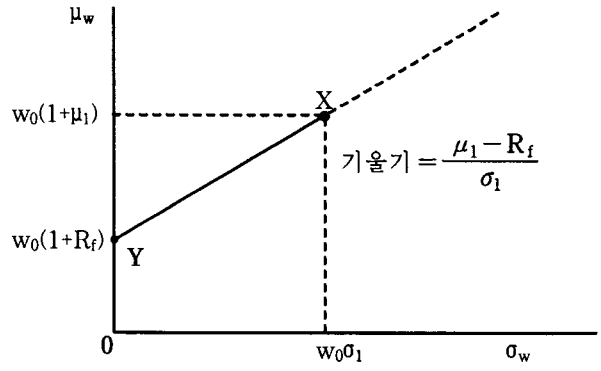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점 X는 신용장거래관습을 전부 전통적인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점 Y는 이와는 반대로 신용장거래관습을 전부 eUCP 신용장거래관습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mu_\omega - \sigma_\omega$) 평면상에 도출해낸 이 1차식의 선형관계식은 신용장거래계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조합 중에서 최대의 기대효용을 가져다주는 한 점을 택할 것을 함의하는 효율적 배분가능선이라 할 수 있겠다.[11]

따라서 신용장 거래계는 당해 효율적 배분가능선 상의 수많은 점들 중에서 신용장거래주체들의 위험회피도를 반영하는 신용장거래계의 무차별 곡선[12])과

11) 일반적으로 투자론에 있어서는 소위 무위험자산(risk free asset)과 위험자산(risky asset)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의 조합을 예산선, 효율적 집합, 기회집합, 자본배분선, 거래선 등 여러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거래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의미하는 효율적 거래선이라는 용어를 준용하기로 한다. 이들 개념에 대한 재무경제학적 표현은 박정식·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 2004, p.182 ; 최운열, 투자론, 박영사, 2004, p.121 ; Thomas E. Copeland & F. Fred,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3rd ed*, Addison-Wesley, 1992, p.171 ; 국찬표, 구본열, 현대재무론, 비봉출판사, 1996, p.135 ; Hal R. Varian,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 Co., 1992, p.374 참조.

당해 효율적 거래선이 접하는 접점 하나 T(μ^*_ω, σ^*_ω)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하려 할 것이다[그림 2]. 이때 도출되는 접점 T(μ^*_ω, σ^*_ω)가 바로 신용장 거래계가 선택하는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신용장 거래관습의 효율적 배분의 규모가 된다.

이때 만일 신용장거래계가 좀더 위험회피적 효용을 갖는다면 접점 $T(\mu^*_w, \sigma^*_w)$는 점 Y에 접근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신용장거래관습을 좀더 선호하게 됨으로써 총 신용장 거래관습 규모에서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에 의한 해석적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나 전자적 제시라는 신용장계의 새로운 거래관습에 덜 위험회피적 효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접점 $T(\mu^*_w, \sigma^*_w)$는 점 X에 접근함으로써 e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에 의한 해석적용의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림 2] 최적 거래포트폴리오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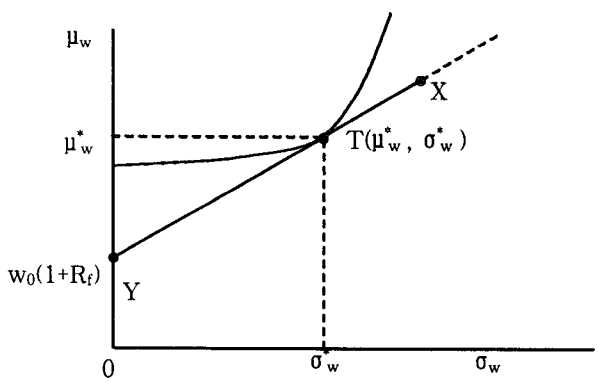

12) 평균-분산 평면상에서 동일한기대효용을 갖게 되는 기대수익률-분산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평균-분산 무차별곡선이라 한다. 위험회피자의 무차별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을 갖는다.

Ⅳ. 신용장거래질서의 최적편성을 위한 제언

1. UCP와 eUCP의 적용범위의 상관관계 : 포섭성(包攝性) 원칙

전자적 제시라는 전자거래 특유의 해석기준을 다루는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기대편익(μ_ω)은 높아지지만, 그로인한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불확실성 (σ_ω)은 증가함은 이미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림 2]에서 보듯 접점 $T(\mu_w^*, \sigma_w^*)$의 변화의 양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 관점에서 사회 법규범의 변화상을 논의할 때, Hayek 교수의 통찰에서처럼[13], 사회구성원들이 준수하는 일정한 행위준칙이 존재할 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행위준칙들이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때에는 그 원천이 되었던 행위준칙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위준칙간에는 기술적 또는 사회적 격차(gap)가 생기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함에 있어 어느 행위준칙이 그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행위준칙간에는 소위 포섭현상(generation lap)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장거래에 있어 사인(私人)간의 신용장거래관습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배해왔던 UCP 역시 이러한 보편적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인 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능성을 중심으로 신용장 거래계에 전자거래에 관련한 제도와 관습이 축적되게 되면 점차 그 위험 회피수준에 변화가 초래되어 신용장거래관습 개편의 주도권은 eUCP 중심의 신용장 거래관습으로 이양되어 갈 수도 있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UCP 중심의 행위준칙으로부터 종속·파생되어 신용장거래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생성·창

13) Friedrich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ledge & Keegan Paul, 1982, p.37 이하 참조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2, p.49

출된 새로운 eUCP 중심의 행위준칙은 장기적으로 모든 요소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접점 $T(\mu_w^*, \sigma_w^*)$가 점차적으로 점 X에 접근해 감으로써 전통적 신용장 통일규칙 중심의 행위준칙들을 감싸 안는 포괄적 기능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리적으로 도출해볼 수 있는 eUCP 적용의 이와 같은 파생효과를 본 연구는 eUCP의 주도적 보충성에 따른 "포섭성 원칙"이라 정의한다면 eUCP 신용장거래관습의 포섭성 원칙은 이미 상술한 바 있는 UCP 신용장거래관습과의 연접성 원칙과 함께 신용장거래관습의 역학관계를 논리적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eUCP의 연접성과 포섭성을 정의해내지 않고서는 eUCP의 모든 조항은 어떠한 무모순성도 보증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UCP와 eUCP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해석적용의 상관관계 : 동조해석의 원칙

한편 문제는 이러한 eUCP의 포섭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eUCP 신용장거래관습은 기존의 신용장통일규칙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의 많은 영역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대체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두 규범간의 충돌로 이어져 오히려 신용장거래 질서는 비효율적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무차별적 대체현상을 방지하고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적 확대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eUCP의 포섭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편적 시장질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eUCP의 포섭적 적용방식에 일정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UCP 신용장거래관습과의 연접성을 중심으로 두 거래관습 상호간의 경합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UCP와 eUCP를 공존시키는 통합과 조정의 묘를 구현, UCP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신용장거래관습을 최적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해석적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eUCP 조항들이 신용장거래에 적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통적인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적용이 일단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각 eUCP 조항들의 적용에 따른 기대편익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본 연구는 이유시피 해석적용의 "동조(同調) 해석의 원칙"이라 정의하도록 한다. 신용장 거래관습의 해석에 있어 이와 같은 동조 해석의 원칙은 이미 상술한 바 있는 eUCP 2조 (b)에 함의되어 있으며 이는 연접성 원칙, 포섭성 원칙과 함께 신용장 거래관습의 효율성 진작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하겠다.

둘째, 이러한 eUCP의 동조해석의 원칙에 따라 UCP 조항들과 eUCP 조항들은 크게 두가지 형태의 상관관계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하나는 eUCP 조항의 편익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일 때와 다른 하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형태일 때이다.

우선 전자의 형태일 경우 eUCP 조항이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의 해석적용에 따른 기대편익은 UCP 신용장 거래관습이 당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에 주는 편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조항은 위험회피형의 신용장거래주체들에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 한계효용은 감소,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한계효용은 당해 eUCP 조항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당해 eUCP 조항은 자신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대편익을 갖지 않고서는 위험회피형의 신용장거래계에게 높은 가치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형태일 경우, 다시 말해 eUCP 조항의 해석적용 결과가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편익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경우 당해 eUCP 조항의 기대편익은 UCP 신용장거래관습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에 주는 편익보다도 작게 될 것임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조항은 그 설득력이 적어 점차 전체 신용장 거래관습 체제내에서 사문화되어갈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고 eUCP 신용장거래관습으로 존속하여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편익은 비록 낮지만, 신용장 거래주체들의 전자적 제시라는 행위가 주는 법적 불확실성을 반드시 낮춰줄 수 있는 해석적용 결과를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즉 신용장 거래관습 체제 전체의 편익을 동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자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특유의 거래 리스크를 제거하는 안정적 기능을 담당한다면, 당해 조항은 신용장거래계의 선택 가능한 조항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끝으로, eUCP 각각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당해 조항들에 대한 신용장 거래계의 위험회피정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14] 이러한 사실은 UCP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신용장거래관습이 함께 통합되어진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체제에 대해 특정 eUCP 조항이 주는 영향을 함의하는 바, 이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총 기대편익의 크기가 특정 eUCP 조항의 해석적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법적 불확실성의 변동리스크를 함의한다 하겠다. 이는 eUCP 조항의 가치의 평가는 당해 조항 자체의 리스크, 즉 법적 불확실성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체제 속에서 당해 조항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의 총편익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분석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CP의 한 개별 조항을 분석할 경우 그 지표인 기대편익과 그에 수반되는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요인만을 가지고 다른 기존의 신용장거래관습, 예컨대 UCP 조항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이 두 특정 신용장 규범간에 기대편익이 더 크다, 또는 법적으로 불안정성이 더 크다든지 하는 결과 내지는 기존의 신용장거래관습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어서 기대편익은 높이(낮게) 인정되지만 그 법적 불확실성은 크다(작다)든지 하는 소위 개별적 쌍대비교의 결과만이 나열될 뿐, 당해 특정 eUCP 조항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총 편익에 다른 기존의 신용장거래관습들에 비해 얼마큼 기여 내지 영향을 주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eUCP 각 조항들에 내재한 법적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전체 신용장거래관습과 관련하여 기존의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과 eUCP 내의 다른 조항과의 상호 연계성 속에서 이들간의 상호 영향력에 근간하여 당해 eUCP 개별조항이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총 편익의 크기에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하는 해석적용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4) 3장 2절 참조

Ⅴ. 요약 및 결론

UCP 중심의 신용장거래관습과 추후 eUCP로 계속 구현될 전자 신용장거래관습은 상호간의 연접성, 포섭성, 그리고 동조성 특질에 따라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신용장거래계의 최대의 현안 과제는 신용장거래주체들에게 당해 규범들이 합당한 해석적용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이 두 신용장거래 규범들이 최적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 방안이라 보겠다. 왜냐하면 이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고, 신용장거래관습을 확대개편시킴과 아울러 신용장거래계의 편익을 궁극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 거래질서로서의 맥락구조가 될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관습의 외연의 확대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신용장거래관습을 개편하고 진화, 발전시켜야 할 신용장거래계의 향후 과제를 위한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UCP가 오랜 기간 신용장거래관습의 준거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주된 요인은 그 근저에 거래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었던 특유의 법칙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UCP의 법적 안정성과 이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학계로부터 그간 부단히 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뒷받침되어 왔다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eUCP가 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리구축과 함께 수긍 가능한 형태로 제반 해석 기준들이 확증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은 eUCP 연구와 이의 실무적용에 전제 요건이 됨은 자명하다.

본 연구가 추출한 UCP와 eUCP간의 연접성·포섭성·동조성 특질은 본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원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학계나 실무계에 새로운 운용원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 eUCP 신용장 관련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례의견의 가공성을 가능한 배제시켜 일관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원리들은 학계와 실무계의 개방적 지평 속에서 계속 이를 입증해가는 노력이 반드시 뒤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장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게 될 UCP와 eUCP, 그리고 이를 보충할 법원의 판례의견들에 대해 어떤 일관화된 논리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도출시키

고, 이를 예측가능한 형태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신용장 거래질서를 최적편성해 나가기 위한 보편적인 형태로서의 효율적인 행위준칙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강원진, "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 17권 1호, 2002, 5.

국찬표, 구본열, 현대재무론, 비봉출판사, 1996,

김기선, "eUCP의 본질적 함의와 조항해석적용의 괴리조정:법해석학적 접근", 무역상무연구 제 1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8,.

박성철,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의 쟁점,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6.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2.

박정식 · 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 2004,

최석범, "eUCP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최운열, 투자론, 박영사, 2004,

Byrne, James E, "Revised UCC Section 5-108(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CCLJ*, Spring, 1997.

Byrne, James E. & Taylor Dan, *ICC Guide to the eUCP : Understanding the Electronic Supplement to the UCP 500*, ICC Pub. S.A., 2002.

Cameron, Bill, "*eUCP*",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3*, July-Sept., ICC Pub. S. A., 2001.

Copeland Thomas E. & Fred, F.,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3rd* ed, Addison-Wesley, 1992,

Dattu Zahoor N., "eUCP Watch:Are the Bank Ready?", *LC Monitor, Vol.4, Issue 4*, April, 2002.

Gatti M. Margarett, "Maximizing Profita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2*, 1998.

Harfield, Henry,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outledge & Keegan, Paul, 1982.

ICC,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o*, ICC Pub. S. A., 2002.

Mandell, Gary, "Export Credit Insurance : An Effective Marketing and Financing Tool",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Mattis, John F., "Export Payment Terms Adjust the Risk to Exporters and Cost to Importers", *Letter of Credit Update, Vol.14, No.1*, 1998.

Schwarzenberger, George,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Stevens & Sons, 1967.

Varian, Hal R.,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 Co., 1992,

VerLoren Van Themaat, Peter,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ue, 1981.

ABSTRACT

A Theoretical Study on the Implication of Substantial Harmonization between the eUCP and UCP

Kim, Ki Sun

With the advent of new customs and practice of electronic records, the eUCP provides some useful guidance to accommodate the presentation of the paper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also provides necessary rules to allow the UCP and eUCP to work together.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many of the UCP articles are not impacted by 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equivalent of paper documents, so the integrated application of the UCP and eUCP will be broad enough to allow for developing practice in this area.

This study discusse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global usages of letter of credit through the finding of optimal solution in the state of uncertainty caused by the electronic presentation of document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cision rules be developed to show how individuals choose optimal portfolio between the eUCP and the UCP that maximize their expected utility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also suggest that the optimal portfolio be determined at the point of tangency between the efficient trading line and the highest indifference curve in the mean-variance plane.

This study finally recommends three rebuttable doctrines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CP and UCP such as linkage characteristics, generation lap propensity, and homothetic application rule, which may be the critical standards for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usages of the eUCP and UCP.

Key words : UCP, eUCP, Relationship between the eUCP and UCP